

LPG, 가격표시제 강화 공정거래 유도

유통단계에서 거래가격 투명성 높여 ... 가격표시판의 규격·위치 제정

앞으로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는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최근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LPG의 유통단계에서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LPG 충전소와 판매소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입구나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숫자의 크기는 충전소는 가로 5.5cm(숫자 1은 제외), 세로 12.0cm, 굵기 1.5cm 등이고, 판매소는 가로 3.5cm(숫자 1은 제외), 세로 4.5cm, 굵기 0.7cm 등이다.

또한, 가격표시판에는 제품명과 정상가격(카드결제, 셀프충전 등 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판매하는 가격) 등 가격정보 이외의 내용은 표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할인가격이나 할인을 또는 할인금액의 글자크기는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정상가격의 글자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가격을 표시하는 등 고시규정을 위반하면 시정권고와 함께 50만~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고시는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와 시도 및 시군구의 가스관련 업무담당과, 그리고 대한석유협회, 한국LP 가스공업협회 등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으로 액화석유가스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막고 소비자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20>